

第301回國會 (臨時會) 政治改革特別委員會會議錄 第 6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11年6月24日(金)

場 所 特別委員會會議室(議員會館 101號)

議事日程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審査된案件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1

(10시19분 개의)

○위원장 이경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임시국회 제6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의 의사일정은 그동안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에서 네 차례에 걸쳐 심사를 하여 여야 위원 간에 합의 처리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를 마련하여 처리하는 일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위원장 이경재 의사일정 제1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훈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정훈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장 김정훈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선거법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현재 소위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의견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 내용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외선거제도와 관련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이 끝나기 전에 재외투표가 개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후보자 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으로 앞당기고, 2개의 선거가 연이어 실시되어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기간이 겹치거나 인접한 경우에는 하나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만 설치하도록 하며, 천재지변이나 전쟁·폭동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재외선거 사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재외투표소에서는 출구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같은 사람이 둘 이상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접수된 내용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외선거의 투표도 기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재외투표소에서 프린터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투표소에서 본인 여부 확인에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투표참여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선거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시각장애 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고,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확정 후 구·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 및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권자의 편의를 확

대하는 한편, 당선인의 임기 개시 전 사퇴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 관계자와 신분 보유기간이 짧은 연설회 등은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발송 횟수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선거운동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김정훈 공직선거관계법소위 위원장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재 예, 박기춘 위원.

○박기춘 위원 박기춘 위원입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발송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물론 선거운동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유권자의 10% 이내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박기춘 위원 전체 유권자에게 발송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박기춘 위원 그러면 그 10%인가 그 범주 내에서 횟수 제한이 폐지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백원우 위원 10% 하고……

○박기춘 위원 10%에 대한 것은 횟수가 지켜지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박기춘 위원 그러면 10% 대상자한테 몇 번이든 반복해서 보내도 상관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박기춘 위원 아니, 그것 명확하게 해야 돼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1회에 제한되는 것을 구태여 10%한테 보내는 것을 1회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냐는 쪽으로 의논이 된 것으로……

○박기춘 위원 이번에는 전체 100% 대비해서

A지역에 10% 다음번에는 또 B지역에 10% 이렇게 해 가지고 100%가 되는 게 아니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아니, 그런 것 아닙니다.

○박기춘 위원 아니면 10% 이내의 대상한테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계속 해도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박기춘 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박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영진 위원 아니, 지금 만약에 8만 유권자다 그러면 예비후보자가 8000매를 보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8000명한테 한 번만 보낼 수 있는 것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은 8000매 전체 총량은 그대로 두더라도 800명씩 잘라서 열 번 보내든지 이렇게 하자는 거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그렇습니다.

○권영진 위원 8000명에게 계속 몇 번 보내도 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그렇습니다.

○권영진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좀 오해가 있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아니, 선거인 수 10%는 픽스가 되어 있는 거고 횟수 1회를 가지고 나누어서, 1회를 하든 나누어서 하든 그것은 10% 범위 안에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박기춘 위원 대상은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백원우 위원 횟수는 늘려도 되고요. 5%씩 두 번 보내도 되고 3%씩 세 번 보내도 되고요.

○최규성 위원 총량은……

○백원우 위원 총량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이경재 다른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곤 위원 지금 소위원회 결과보고를 개략적으로만 들어서 제가 구체적인 문안을 볼 수 없어서 좀 질문을 드리는데 어저께 정치개혁특별위

원회 전문위원이 보낸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의 1차 합의사항에 보면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1차 합의사항 재외선거인명부에 관한 사항 열한 번째에 ‘공관을 통한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등재 여부 확인—신설조항이네요—공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송하는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재외선거인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되 재외선거인명부 등이 확정된 후에는 복수국적을 이유로 선거권 유무에 대해 법적·행정적 이의 제기를 불허한다’ 이게 선관위 개정의견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일단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이 되면 나중에 복수국적이 확인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그냥 선거권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것 좀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이 부분은 소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되어 가지고 ‘명부가 확정된 후에’를 ‘선거 후에’로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잘 안 들리는데 마이크를 이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지금 현재 ‘재외선거인명부가 확정된 후에’를 명부 확정 후에도 사망이나 다른 사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심의 과정에서 ‘투표 한 후’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부분은 불법 국적자의 선거 참여를 배제하는 그 부분에 대해 확정적으로 또 사후에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소위 과정에서 선관위 의견이 수정되었습니다.

○김성곤 위원 수정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사무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위원장 이경재 용어상의 문제를, 복수국적이 나중에 발견되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한다 그 얘기는 복수국적자는 애당초부터 선거권이 없다는 전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지금 저희들이 복수국적 중에서도 일부가 허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적 이중국적자……

○위원장 이경재 잠깐만요. 용어를 좀 분명히 해야 되는데 복수국적이라 함은 우리 한국의 국적을 갖고, 외국의 국적을 가졌더라도 한국 국적

을, 정식으로 귀화한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등재 후냐 또는 투표 후냐 그것 상관없이 선거권자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중국적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도 정부의 허가 없이 이중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불법…… 선거권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이 투표하고 난 다음에는 투표 후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인정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어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맞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위원장 이경재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를 바꿔야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이 문안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안에는 지금, 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은 ‘누구든지 재외선거인 등이 투표한 후에는 그 재외선거인 등의 선거권 유무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행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장 이경재 예, 그것은 정확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정확한 표현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그런데 아까 ‘복수국적이 되더라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잘못이다 이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지난번의 국적법……

○위원장 이경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윤환 위원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성윤환 위원님.

○성윤환 위원 218조제9항을 신설하는데요. 218조9항의 경우에는 제가 언뜻 보기에 총선 후에 대선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부적격자를 교체하거나 혹은 다시 뽑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규정을 둬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기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부작용이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지금 저

회들은 선거인명부를 수시명부를 선거 때마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은 그대로 있는 부분입니다.

**○성윤환 위원** 그러니까 이 9항을 신설하는데요. 61페이지 여기 보시면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6개월 이내에 다른 선거가 있을 때는 계속 시키자 이런 내용으로 돼 있는데요. 9항 자체를 신설하지 말고 없애버리는 게 옳지 않겠는가, 이것은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 그때 그대로 쓰면 되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바뀌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을 법률에 규정을 둬으로써 손을 못 대게 만드는, 오히려 지속하는 게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지금 재외선거위원회 설치가 법규정에서 선거일 전 6월 전부터 그다음 1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연이어서 되는 것 같으면 다시 시기와 종기가 있기 때문에 다시 연이어 다시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똑같은 그런 것을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요. 그 부분은……

**○성윤환 위원** 제 말씀은 종전에 구성했던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제점이 있다, 문제가 있다 했을 때 고칠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대로 강제적으로 가야 하는 그런 일이 생겨서 그래서 이것은 없애 버리고 그때그때 봐서 그대로,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그 인원 인적 구성을 그대로 써서 구성해 버리면 될 거고 아니면 고쳐야 될 것 같으면 인적 구성을 바꾸면 될 것 같아서 9항은 없어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관리상 없애는 게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이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위원이 그때마다 부적격자가 있으면 정비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정당추천위원일 경우에는 위원회법에 따라 가지고 수시로 부적격자가 있으면 추천권자가 교체하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성윤환 위원** 부적격자라 그러면 당연히 교체하면 되는데요. 부적격자가 아니고 보니까 부당한 사람이 있다, 이럴 경우 못 바꾸지 않습니까? 어디 상당히 편파적인 사람이거나 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거나 이럴 때는 사실상 바꾸기 어렵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위원에 대한 해임·해촉에 관한 부분이 별도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윤환 위원** 글썄, 제 생각에는 굳이 이 조항이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오히려 속박하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서 없애는 게 맞겠다……

어떻습니까? 실무하시는 분들 어떻게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실장 김용희** 선거실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우려하는 바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한번 위촉이 되고 나면 정치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그 임기 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국내법에서는 6년의 임기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외선거의 경우에도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하고 다시 하도록, 예컨대 내년엔 있을 양대선거 그 선거의 경우에는 한 달 정도 갭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연이어서 대통령선거까지 같이 하는 것이 어떻까 하는 의도에서 이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성윤환 위원** 하여튼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위원장 이경재** 다음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선관위원장님이나 실무자한테 좀 여쭙겠는데요.

제가 재외선거 관련 실무 책임자한테 얘기 듣기로는 투표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투표소 설치라든지 순회투표소 문제라든지 등등에 관한 것이 이번 6월 국회에서 결정이 되지 않으면 예산 문제나 행정절차상의 필요한 준비 시간 때문에 6월을 넘겨서는 논의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되든 안 되든 6월 중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제가 실무책임자로부터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이번 소위에서 거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6월 국회 넘으면 제가 볼 때는 9월 국회를 넘어가야 될 겁니다. 그때 결정을 해도 내년 재외국민선거에 이것을 할 수가 있는지 그것을 좀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이번에 합의된 부분은 절차법정사무, 절차사무를 완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이 반영되었다고 보아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투표 방법이라든지 추가투표소 설치 부분, 그 부분도 저희들은 상당히 빨리 결정을 해 줌으로써 준비에는 차질이 없을 거라고 봐줍니다.

오늘 합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의결해 주시면 절차법정사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투표 방법이라든지 추가투표소 설치, 더 나아가서 재외에서 벌어진 재외선거사범에 대한 단속 실효성 확보 같은 부분 이런 부분도 가급적 빨리 입법하는 방안을 저희들은 양망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후반기로 넘어가도 내년 선거 진행하는 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최대한 빨리 심의 의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김성곤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속히 9월 이전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선숙 위원님.

**○박선숙 위원** 저는 방금 김성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상정돼 있는 것 이외의 내용들 가운데 좀 시급히 논의되어서 확정돼야 될 내용 가운데 재외투표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번 전체회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중국 등 그 나라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 그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실제로 투표소를 설치하고 투표를 하는 나라가…… 선거실장님, 다른 나라들이 중국에서 투표소 설치해 가지고 투표하는 나라 있습니까? 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중국에는 지금 현재…… 중국이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 중국이나 캐나다나 독일 부분에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여건이 열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 재외국민들이 공관을 중심으로 밀집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밀집이 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관 투표소가

공관의 이게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의 경우에는 종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시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가투표소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관에서 다 흡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중국은 보여줍니다.

**○박선숙 위원** 제가 조금 지난번 질의와는 다른 말씀 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중국 현지에서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일정한 수준에서의 선거 참여 독려나 선거운동 자체가 중국 현지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일 것입니다. 게다가 투표소를 설치해서 투표하는 방법도 이례적인 것이어서 저는 지난번에 이동투표소 설치 같은 문제는 특히 중국에서는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니냐는 말씀 드렸고요.

공관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답변 들었습니다마는 공관으로 흡수해서 투표를 하는 행위 자체도……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상당히 중국 전역에 걸쳐서 어쨌든 투표가 이루어지는 그 일 자체가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하지 않은 문제점을 낳을 수 있어서 훨씬 좀 꼼꼼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우편투표 문제에 대해서 저희 많은…… 선관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우편투표를 통해서 자국의 선거에 투표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중국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비교해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급하게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제가 다른 것 한 가지, 지금 상정된 안건과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 정치개혁특위에서 앞으로 논의하게 될 내용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전체회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치자금법상에서의 일종의 계좌추적권인데요. 선관위 계좌추적권이 검찰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허용된 범위보다 훨씬 폭넓게 되어 있고 또 검찰이나 선관위가 계좌추적을 할 경우에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추적한 계좌의 해당 명의인에게

일정 시간 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금융실명 제법의 적용을 받는 것에 비해서 검찰, 공정거래 위원회 등과는 달리 선관위는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로 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정치자금법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잉입법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지난번에 제가 드렸습니다.

선관위가 필요에 따라 후원회 계좌의 내용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보 제공 받아 검토해 볼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권리는 보장하되 그 계좌의 명의인과 그 계좌에 입금한 입금자에게는 본인의 금융거래 내역이 선관위에 제공되었음을 사후 통보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법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정치자금법이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 국회 본회의는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하여 선관위도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계좌추적을 할 경우에는 명의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그런 법절차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정치자금법의 계좌추적 이후에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는 정치자금법의 그 조항은 실효가 되었습니다, 어제 그 본회의 통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법을 저희가 추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조항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어제 개정된 금융실명제법은 다시 실효가 됩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 앞으로 정치자금법 논의 과정에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그동안에 그 조항을 인용해서 선관위가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계좌추적을 몇 건을 했는지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93건의 자료를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계좌 열람하셨습니다. 이 93건이 93명 명의인의 계좌입니까, 아니면 1명에게 중복된 건수입니까?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담당 국장이……

○박선숙 위원 하십시오, 담당자가.

93명입니까, 아니면 93명 이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당국장 손재권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에 대한……

○박선숙 위원 건으로 나왔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요청 건수는 총계는 218건이고요, 총계는

218건입니다. 금융거래자료 요청 건수는 218건인데 제가 이 218건은 218명의 계좌를 들여다 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요청 사유 가운데 불법후원금이라고 해서 요청한 건수가 93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관위에서는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중단하겠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알고 계실 텐데 아마 93명의 계좌를 자료 열람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라도 답변 주십시오.

제가 동료 위원께서 이 건이 현안, 본 건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돼야 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원우 위원 이경재 위원장님, 자료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정당국장님이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연도별로요, 박선숙 위원님께서 정무위에 계시니까 이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선관위에서 연도별로요, 연도별로 저희한테 자료를 다 제출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당국장 손재권 예, 알겠습니다.

○백원우 위원 그러니까 이 정치자금법이 개정되고 나서 2004년도 이후에 연도별로 지금 이런 형태의 자료들을 건수로 다 보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당국장 손재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통과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 및 심사보고서 내용 작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통과와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종우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위원들께서 합의하신 입법취지를 잘 반영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관련 규칙과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모든 역량을 모아 재외선거가 처음으로 실시되는 내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선거를 공정하고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 위원회는 오늘 심의 의결된 내용 이외에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중대 국외선거법에 대한 여권발급 등 제한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시민권자 등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방안,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순회접수, 공관 외 장소에 추가 투표소 설치, 파병 군인 등에 대한 제한적 우편투표 허용 등을 개정 의견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외선거법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행정적 제재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재외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화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관계법 심의를 위해 진력하시는 이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앙선관위 등 관련 기관에서는 법률안 심의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직선거법 중 일부 개정 내용을 통과시켰습니다마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에 개정되어야 할 내용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김성곤 위원 등 여러 분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재외국민 선거에 있어서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에 8월 하순 경 열릴 예정으로 있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관련 소위에서 열심히 법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다른 문제제기가 있으신가요? 없으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권영진	김성곤	김정훈	김혜성
박기춘	박선숙	박준선	백원우
성윤환	여상규	이경재	이은재
최규성			

**○청가 위원(2인)**

류근찬 안효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연호
전문위원	손충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사무총장	이종우
선거실장	김용희
정당국장	손재권

**【보고사항】**

**○의안 회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2011. 6. 20 박선숙·박기춘·김동철·최규성·이미경·송민순·조영택·장세환·이석현·유선호·노영민·이성남·신낙균·우제창·원혜영 의원 발의)

6월 21일 회부됨